

2025년 콘텐츠IP 라이선싱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절차

1) 신청서 작성

- 신청양식은 e나라도움 및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2025 콘텐츠IP 라이선싱 지원사업> 공고문 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메인메뉴 중 ‘알림마당’ → ‘지원사업’ 선택
 - 2025년 콘텐츠IP 라이선싱 지원사업 공고문 클릭
 - 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다운로드’ 클릭 → 양식 다운로드 → 제출서류 작성

2) 신청서 제출 전 사전준비

- 신규신청자는 e나라도움 신규가입을 하여야 함
 - e나라도움 사용법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상단 매뉴얼 클릭 하여 ‘[공모형] 사업신청 방법(예치형)’ 다운로드하여 숙지

[e나라도움 준비사항 및 컴퓨터 환경]

- (준비사항) e나라도움 회원가입 / 회원가입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준비 필요
- (컴퓨터환경) PC운영체제 : 윈도우10 이상

3) 신청서 제출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e나라도움 입력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첨부파일 업로드 용량은 50mb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유의
- 신청서류로 평가가 진행되오니 e나라도움 접수 시 첨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신청서 제출 상세 설명]

① 공모현황 조회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go.kr) 로그인 후 e나라도움 내 좌측상단 **공모신청** 클릭하여 공모명 '2025년 콘텐츠IP 라이선싱 지원사업' 검색

◆ 공모현황

순번	사업명	공모명	공모내역 변경일시	신청서 작성처	공모기간	지원대상	지원액(천원)	지원내용	수행기간	접수
1	2025년도 크리에이티브미디어	2025년도 크리에이티브 미디어 콘텐츠 창작지원사업		확인	한국전지전	[공통]·기초 운영상 플랫폼에 유동되지 않은 오...	900,000	○ 콘텐츠 실·소요 제작비(기획, 촬영, 편집, 마킹,...	2025-02-14 ~ 2025-12-12	2025-02-14 ~ 20
2	시도기초방역(대지 세정비)	최근 북부방역인양소 백신 지원사업		확인	충청남도 태	태안군 대지 사육농가	36,000	대지 백신바이러스 백신 지원	2025-01-01 ~ 2025-12-31	2025-02-12 ~ 20
3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확인	충청남도 태	가금, 닭, 소 사육농가	120,000	가금 및 닭농가에 가금 방역시설 설치 지원	2025-02-11 ~ 2025-12-31	2025-02-12 ~ 20
4	2025 비전속 신청자가 홍보마	2025 신진작가 전시 지원	2025-02-14 11:18:52	확인	예술경영지	○ (신청대상) 2025년 국내 가회 비전속자와 연...	500,000	○ 비전속자 전시공간 내외 인문 청년(지역) 학...	2025-04-01 ~ 2025-11-30	2025-02-05 ~ 20
5	미술창작-미술주간	2025 미술창작 프로그램 공모	2025-02-10 09:13:47	확인	예술경영지	○ 사업자용특종(개인/법인) 혹은 교육진흥원...	210,000	○ 미술창작 신규 프로그램 기획 운영비	2025-05-01 ~ 2025-10-31	2025-02-05 ~ 20

② 신청서 작성

- 본 공고명 선택 후 '신청서작성' 클릭, 시스템 내 사업신청서 양식 입력

순번	사업명	공모명	공모진행상태	공모기관분류	공모기관	지원대상
1	목재펠릿보일러 보급(보조)	2017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보조)	공고승인	공공기관 및 단체	한국콘텐츠진흥원	○ 농산어촌 지역(행정구역 상 읍·면) 지역
2	물류보일러보급(보조)	2017년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공고승인	공공기관 및 단체	한국콘텐츠진흥원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자

③ 신청서 제출

-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세부추진계획], [자원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자격요건확인], [파일첨부] 탭 순서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제출] 탭의 [신청서제출] 버튼을 눌러 신청서 제출

※ 사업기본정보에 '사업명' 작성시 제출 과제의 과제명으로 작성

예: <코카캐릭터> IP를 활용한 뮤지컬 제작

※ 파일첨부 : 신청서류 번호 순으로 정리한 후, 1개의 압축파일로(파일명 : 주관기관명_과제명) e나라도움 신청 시 파일첨부 탭에서 첨부

※ 파일첨부 후, 반드시 e나라도움 시스템 상단의 '신청서제출' 버튼을 눌러야 최종 제출이 완료됨(마감시간까지 첨부서류가 업로드 되지 않을 경우 접수가 취소됨)

4) 신청서 제출 완료 후 작성내용 점검

- e나라도움 시스템 내 '사업신청현황' 메뉴 활용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폭주하여 기한 내 접수가 원활치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 : 2025.03.17.(월) 15:00까지

2025년 콘텐츠IP 라이선싱 지원사업 FAQ

□ 공통사항

Q. 2025년 콘텐츠 IP 라이선싱 지원 지원자격은?

A. 신청하는 과제 콘텐츠 IP의 원저작권자이거나, 원저작권자와 IP 활용 계약 체결이 완료된 사업자이어야 하며 모집공고문 내 참가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으셔야 합니다.

※ 대기업(자회사, 계열사) 및 예비창업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모집공고문 내 참가기준은 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에 적용됩니다.

Q. 2025년 콘텐츠 IP 라이선싱 지원 지원규모는?

A. 콘텐츠제작의 경우 과제별 최대 5억원까지 10개 내외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사업화의 경우 과제별 최대 1억원 이내 16개 내외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 최대 지원금 2.5억 이상 신청 프로젝트의 경우 총 제작비 중 자부담 비율 50% 매칭 필수.

총 사업비(10억원)=국고보조금(5억원)+자부담금(5억원) → 총 사업비의 50%이상으로 신청 가능

Q. 콘텐츠 IP를 활용한 모든 콘텐츠 장르 개발 지원이 가능한지?

A. 우수한 콘텐츠 IP를 활용하여 기존 콘텐츠 IP의 장르와 다른 콘텐츠의 형태로 개발하는 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수문학(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영화(영화진흥위원회) 등 타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콘텐츠 분야가 결과물의 형태로 나오는 과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래 장르 및 분야는 본 사업 외 진흥원 장르별 사업팀 및 유관기관(영진위, 만진원 등) 사업을 참조 바랍니다.

(최종 결과물 기준)

- 게임(PC, 모바일 등), 방송(TV, 케이블, OTT, 웹 등), 애니메이션, 영화, 출판만화, 극장 상영 영상물 등
- 순수문학(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및 출판도서(전자책 포함), 동영상 강의, 순수 교육용 어플 제작, 트럼프카드 및 놀이용 캐릭터 카드 등

※ 진흥원 및 타 기관 지원 받은 동일 결과물은 지원 불가

□ 사업신청

Q. ‘콘텐츠 제작’ 과 ‘사업화’ 에 동시 지원이 가능한지?

A. 복수 지원은 불가하며 1개 분야만 선택해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제작지원 사업은 한 업체에서 당해연도에 동시수행이 가능한 과제가 2개로 제한되므로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5,000만원 이하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Q. 개발 중인 프로젝트도 지원이 가능한가?

A.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과제도 지원이 가능하며, 협약체결일로부터 종료일까지(2025.12.31.까지) 반드시 사업화(출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 협약체결일 시점에 이미 제작된 콘텐츠로 사업화를 예정하는 과제는 지원 불가합니다.

Q. 타기관에서 지원을 받았던 유사, 혹은 동일한 과제로 지원이 가능한지?

A. 동일한 과제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추후 적발 시 협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선정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A. 신청서 서류가 접수되면 참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과제가 있는지 1차 검토를 진행한 후 공정성을 위해 모든 선정평가는 외부 심사위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서류평가에서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진행하며, 발표평가는 회사대표자(주관기관) 또는 과제책임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Q. 콘텐츠 IP 권리관계 증빙자료로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는지?

A. 자체 IP인 경우 저작권, 상표 등록증 등을 제출해주시면 되고, IP 원저작권자와 IP 활용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관련 라이선싱 계약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Q. 자체 IP이지만 저작권, 상표 등록 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A. 상표권, 저작권 등 자체 IP임을 인증할 수 있는 등록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콘텐츠 IP 활용 프로젝트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콘텐츠 IP 등록 절차는 필수로 진행하신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신청 접수가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편성

☞ 예산편성 주요내용

- ☑ 인건비 산정 시 급여기준은 반드시 소속기관 실지금액으로 하여야 함(급여기준 과대계상 불인정)
- ☑ 산출근거 예시 : 2,500(월급여)×10개월(참여기간)×30%(참여율)=7,500
- ☑ 보수(정규직), 상용임금(계약직) 등 **4대보험 가입자**
 -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내부인건비 편성 가능(협약기간 내 인건비만 인정)
 - ※ 내부인건비 편성 시, 신규인력 채용 필수, 4대 보험 필수(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인건비 편성 불가)
 - ※ 국고보조금의 50%까지 인건비 편성가능
 - 신규인력 채용: 협약기간 내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하고 협약 이후 채용관련 서류 제출 **必**(4대 보험 필수))

☞ 예산편성이 불가능한 항목

- ☑ 불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자산취득비
- ☑ 각종 수수료(계좌이체 수수료, 우편송금 수수료 등)
- ☑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 ☑ 특근매식비, 휴일 근무수당, 차량 유류대 및 차량 관련 소모품비 등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

목	세목	용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증빙방법
인 건 비 (110)	보 수 (01)	< 용도 >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 산정 및 정산 기준 > ○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퍼센트)에 따라 계상	계좌이체	①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 ② 원천징수영수증 ③ 급여명세서 ④ 임금증 ⑤ 4대보험가입자명부 ⑥ 4대보험기관부담금 납입자료 ⑦ 신규채용 채용계획품의서
	상 용 임 금 (03)	< 용도 > 1. 무기 계약직 및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 및 인턴 등 (상여 수당 포함)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산정 및 정산 기준 > ○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계약직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계좌이체	①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 ② 원천징수영수증 ③ 급여명세서 ④ 임금증 ⑤ 4대보험가입자명부 ⑥ 4대보험기관부담금 납입자료 ⑦ 신규채용 채용계획품의서
운 영 비	일 반 수	< 용도 > 1.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계좌이체 or 카드사용	○ 카드거래 시 ① 카드매출전표 ② 견적서 ③ 계약서(계약사항 시)

(210)	용 비 (01)	<p>및 유인물의 제작비</p> <p>2.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p> <p>3. 광고료 및 광고료 - TV,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광고 및 광고료</p> <p>4. 전문가활용비(번역료, 통역료 등 단순 인건비)</p> <p>* 본 사업과 관련된 광고·홍보 비용 전문가 비용만 인정</p> <p>< 산정 및 정산 기준 ></p> <p>○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p> <p>○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p>		<p>④ 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p> <p>○ 계좌이체 시</p> <p>① 세금계산서&입금증</p> <p>② 견적서</p> <p>③ 계약서(계약사항 사)</p> <p>④ 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p> <p>○ 전문가활용비</p> <p>① 위 자료 +</p> <p>② 입금증</p> <p>③ 원천징수영수증 및 납부영수증</p>
	임 차 료 (07)	<p>< 용도 ></p> <p>○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p> <p>< 산정 및 정산 기준 ></p> <p>○ 지원과제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p> <p>○ 지원과제와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p> <p>* 본 사업과 관련된 제작장비 임차, 공연 장소 대관 등에 한함(사무실 임차료 인정불가)</p>	카드사용	<p>○ 카드거래 시</p> <p>① 카드매출전표</p> <p>② 견적서</p> <p>③ 계약서(계약사항 사)</p> <p>④ 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p> <p>○ 계좌이체 시</p> <p>① 세금계산서&입금증</p> <p>② 견적서</p> <p>③ 계약서(계약사항 사)</p> <p>④ 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p>
	일 반 용 역 비 (14)	<p>< 용도 ></p> <p>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p> <p>< 산정 및 정산 기준 ></p> <p>○ 지원과제 수행의 일부를 외부기관(수탁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p> <p>* 2천만원 초과 용역비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을 통한 계약 필수</p> <p>*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의 위탁거래 불가</p>	계좌이체	<p>① 위탁사업계약서(수행계획서 포함)</p> <p>② 견적서</p> <p>③ 세금계산서</p> <p>④ 입금확인증</p> <p>⑤ 위탁과제 결과보고서</p> <p>⑥ 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p>

Q. 전체 사업비 대비 위탁사업비, 인건비 등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가?

A. 인건비는 국고보조금의 50%까지 편성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비 조정심의 중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제와의 연관성, 과다계상 검토 예정)

Q. 협약 이전 발생한 제작비용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A. 협약기간 내의 사용분만 인정되며, 협약이전 사용된 제작비용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Q.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이 가능한가?

A. 콘텐츠 IP 라이선싱 지원 사업은 우수 콘텐츠 IP의 라이선싱을 지원하기 때문에 홍보 마케팅을 위한 예산 비용 일부 지원은 인정됩니다. 다만 개발 비용 비중보다 클 수는 없으며, 개발 취지에 맞춰 적정선에서 사업비를 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Q. 사업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무엇인가?

A. 본 사업을 통해 개발을 희망하는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는 최종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개발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협약 전 진행되는 사업비 심의조정 심의에서 제작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예산은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연월차수당이 지급 가능한지?

A. 인건비는 연봉 혹은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원천세 공제전 금액)에 대해서만 책정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상의 통상임금에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하고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는 주관기관이 원천징수 후 관할 세부서 납부 필수

A. 내부직원에게는 전문가활용비 지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A.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인건비로 편성이 불가합니다.

Q. 인건비는 어떤 증빙이 인정되는가?

A. 인건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월별 급여대장 및 급여지급관련 내부결재 문서(지출결의서 등),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납부영수증, 개별 급여지급 계좌이체 증빙, 고용계약서, 고용보험가입확인증(4대보험가입자 명부), 보수 산정내역(고용계약서, 월급여, 참여율, 사업비 인정액을 엑셀파일로 정리)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 실거래자(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회사(고용주)가 직접 입금한 내역만 인정

※ 대표자와 특수관계(가족 등) 및 이중취업자의 경우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부정수급 의심자로 분류되어 감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부가가치세도 인정이 되는지?

A.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신청 대상이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사업 신청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만 사업비로 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부담금(자부담)

Q. 2025년 콘텐츠IP 라이선싱 지원의 자기부담금 비율은 얼마인지?

A. 2025년 콘텐츠IP 라이선싱 지원의 자부담 비율은 총사업비의 10% 이상입니다.

단 최대 지원금 2.5억 이상 신청 프로젝트의 경우 총 제작비 중 자부담 비율 50% 매칭 필수입니다.

예를들어 신청 지원금이 5억일 경우 총 사업비는 10억 이상, 자부담이 5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자기부담금(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A. 자기부담금 비율은 총사업비 중 자기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총사업비 = 국고지원금 + 자기부담금

예) 총사업비가 1억인 경우, 정부지원금이 9천만원, 자기부담금은 1천만원일 경우 자부담금 비율은 10%

Q. 자기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은 무엇인지?

A.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국고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하며, 자기부담금 비율 이하로 자기부담금을 집행하거나, 자기부담금을 미집행한 경우 e나라도움에서 국고지원금의 집행이 불가합니다.

[예산집행 방법]

- 1안 : 총 자부담 금액을 모두 사용 후 국고지원금 집행

※ 예) 총사업비 10억(지원금 9억, 자부담 1억, 자부담 비율 10%)일 경우 자부담으로 1억원을 모두 집행한 뒤 지원금 9억원 사용 가능

- 2안 : 우선 집행한 자부담 비율만큼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

※ 예) 총사업비 10억(지원금 9억, 자부담 1억, 자부담 비율 10%)일 경우 자부담으로 2천만원을 우선 집행하였다면 자부담의 20%를 우선 집행하였으므로, 지원금의 20%인 9천만원 이하로 사용 가능

※ 단, 자기부담금이 없는 세목의 국고지원금의 집행을 위해 별도 승인절차를 통해 집행 가능

※ 자기부담금 미집행 비율만큼 국고지원금이 환수되오니 미집행 되지 않도록 권고 드립니다.

Q. 자기부담금은 꼭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나?

A. e나라도움 시스템의 자부담 집행원칙에 따라 사업비 통장에 자부담 금액 비율만큼 현금을 입금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컨소시엄

Q. 다른 회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어느 기업이 주관기업이냐에 따라 평가점수가 달라지게 되는가?

A.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평가받게 되지만, 주관기관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이므로 주관기관에 따라 점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역할

명 칭		내 용
수행기관	주관기관	지원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당해 지원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이며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음 ① 지원사업.지원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책임 ② 사업비중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③ 지원사업.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행정 ④ 사업비의 사용과 관리 및 정산 ⑤ 지적재산권 출원 및 기술이전 등 지원성과의 활용촉진 ⑥ 보안에 관한 종합관리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이며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음 ① 지원사업.지원과제에의 공동참여 및 협력 ② 사업비중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③ 지원성과의 활용 ※ 정부지원금 수령, 사업자부담금 부담 등 의무가 있음 ※ 단순 수행업무 위탁, 대행사는 참여기관이 아님
총사업비		"보조금(지원금)"과 "자부담금(사업자부담)"을 합한 금액

Q. 제출서류는 주관기관이 대표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지?

A. 제출서류는 안내에 따라 통합하여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e나라도움 에서 사업 신청 시 시스템 상에도 참여기관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참여기관 미등록 시 컨소시엄이 불인정됩니다. 주관기관에서 참여기관까지 확인해서 작성 및 지원 바랍니다.

Q.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회사 모두 e나라도움 시스템에 가입해야 하는지?

A.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모두 e나라도움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신청은 주관기관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A. 주관기관이 e나라도움 시스템의 사업신청에 참여기관을 미등록하면 컨소시엄이 불인정됩니다.

A. 주관기관과 컨소시엄 모두 각 부문의 제작지원 지원자격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세부 지원자격 모집공고문 내 참가기준 참조)

Q. 주관기관이 IP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여 신청하는 경우 IP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참여해야 하는지?

A. 그렇지 않습니다.

과제 추진 내용에 따라 IP저작권을 보유한 기업이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으며 국고지원금 활용이 필요한 경우 참여기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이 IP 원저작권자의 과제수행부분이 없으면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단순 수행업무 위탁이나 대행사는 참여기관이 아닙니다.